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33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모경중 · 권향엽 · 김교홍
김남근 · 김영환 · 김 윤
문정복 · 박성준 · 박 정
박정현 · 박지원 · 박해철
서미화 · 송재봉 · 오세희
이광희 · 이병진 · 이성윤
이재관 · 채현일 · 허 영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러한 장비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된 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첨단 소방장비

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및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첨단 소방장비”란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소방장비로 소방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10장의 제목 “보칙”을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으로 한다.

제46조 앞의 “제11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하고,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신기술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첨단 소방장비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첨단 소방장비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정의 취소) ①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 소방장비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첨단 소방장비의 선행구매) ① 소방청장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소방장비 구매절차를 준용하여 성능평가와 시범운영에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대상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의 소방장비 분류 및 제27조의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장비의 구매·운용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3조(성능평가) ① 소방청장은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에 대하여 신규성·진보성 등 소방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의 수행주체,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범운영) ① 소방청장은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의 현장적용성 확인을 위하여 소방기관을 통하여 시범적으로 이를 운용하게 하는 등의 시범운영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범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방기관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제28조제2항의 상당한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소방청장은 첨단 소방장비의 성능평가 또는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현장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국제교류 및 협력)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협력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소방장비 공동개발연구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종전의 제4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보칙

제50조(종전의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첨단 소방장비 지정의 취소

제52조(종전의 제45조)제3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4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벌칙

제54조(종전의 제47조) 본문 중 “제46조”를 “제53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10장 <u>보칙</u>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첨단 소방장비</u> ”란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소방장비로 소방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10장 <u>첨단 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u> 제40조(<u>첨단 소방장비의 지정</u>) ① <u>소방청장은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신규성 ·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신기술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u>첨단 소방장비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③ <u>첨단 소방장비의 대상 · 기준 · 심사 · 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신 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정의 취소) ①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 소방장비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첨단 소방장비의 선행구매) ① 소방청장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소방장비 구매절차를 준용하여 성능평가와 시범운영에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구매대상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의 소방장비 분류 및 제27조의 소방장비 내용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장비의 구매·운용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3조(성능평가) ① 소방청장은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에 대하여 신규성·진보성 등 소방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의 수행주체,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범운영) ① 소방청장은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의 현장 적용성 확인을 위하여 소방기관을 통하여 시범적으로 이를 운용하게 하는 등의 시범운영 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범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방기관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제28조제2항의 상당한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소방청장은 첨단 소방장비의 성능평가 또는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현장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국제교류 및 협력) 소방

청장은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협력 등을 위한 조사·

<u><신 설></u> <u>제40조</u> ~ <u>제42조</u> (생 략) <u>제43조</u>(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u>제44조</u> (생 략) <u>제45조</u>(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연구</u> <u>2.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u> <u>3.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소방장비 공동개발연구</u> <u>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제11장 보칙</u> <u>제47조</u> ~ <u>제49조</u> (현행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와 같음) <u>제50조</u>(청문)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41조제1항에 따른 첨단 소방장비 지정의 취소</u> <u>제51조</u> (현행 제44조와 같음) <u>제52조</u>(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	---

1. · 2. (생 략) 3. <u>제44조제2항</u>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 · 직원 <u>제11장 벌칙</u> <u><신 설></u> <u>제46조</u> (생 략) <u>제47조</u>(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46조</u>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제48조</u>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제51조제2항</u>----- ----- ----- <u><삭 제></u> <u>제12장 벌칙</u> <u>제53조</u> (현행 제46조와 같음) <u>제54조</u>(양벌규정) ----- ----- ----- ----- --- <u>제53조</u>----- ----- ----- ----- ----- ----- ----- ----- ----- ----- <u>제55조</u> (현행 제48조와 같음)
---	--